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61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. 3. 3.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,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상위법의 입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 대비 의약품·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6조제2항제6호)
- 감염병의 관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. (안 제9조제1항)
-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하도록 조항을 신설함. (안 제21조)
- 역학조사관은 운영함에 있어 1명 이상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도록 함. (안 제22조제1항)

- 시장이 감염병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등에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함. (안 제32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생략)
- 다. 기 타 : 신·구 조문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감염병 대비 의약품·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9조제1항 중 “실시할 수 있다”를 “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21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,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방역관)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22조(중전의 제21조)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장은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.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(정보제공요청 등)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
의 위치 정보를 「경찰법」 제2조에 따른 경찰청,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
(이하 이조에서 “경찰관서”라 한다)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9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<u>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감염병 대비 의약품·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실시하고, 그 결과를 <u>공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방역관) <u>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</u></p>

